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8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639호(1987.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4호(1996.1.9.)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2호(2010.12.1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4호(2014.02.13.)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노원구고시 제2015-28호(2015.07.1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7호(2016.10.1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92호(2021.02.1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1년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07.2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장

1. 결정취지

1995년 12월 체육시설형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노해근린공원에 대해,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체육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공원의 세부 용도를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하계동, 중계동 일대	1,431,637.7	-	1,431,637.7	서고시 제1995-394호 (1996.1.9)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31,637.7	-	1,431,637.7	100.0
주거지역	1,298,497.5	-	1,298,497.5	90.7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120,536.2	-	120,536.2	8.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5,841.8	-	35,841.8	2.5
제2종일반주거지역	176,252.3	-	176,252.3	12.3
제3종일반주거지역	874,569.0	-	874,569.0	61.1
준주거지역	91,298.2	-	91,298.2	6.4
상 업 지 역	5,559.3	-	5,559.3	0.4
일반상업지역	5,559.3	-	5,559.3	0.4
녹 지 지 역	127,580.9	-	127,580.9	8.9
자연녹지지역	127,580.9	-	127,580.9	8.9

2) 도시계획시설(공원)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	노해 근린공원	근린 공원	노원구 중계동 360-18호	34,646.8 (34,569.3)	감)34,646.8	-	1989.10.06 (건고시547)	
변경	①	노해 체육공원	체육 공원	노원구 중계동 360-18 일원	-	증)34,646.8	34,646.8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노해 체육공원	• 근린공원 → 체육공원	주민들의 높아진 체육활동 수요를 반영하고자 노해근린공원 시설을 체육시설 확충에 적합한 체육 공원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 2021년 제13차('21.07.28)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향후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할 것

연번	심의의견
1	체육센터 지하주차장에서 공원 지상부로 연결되는 별도의 보행접근동선 설치
2	공원이용자의 주차수요까지 고려한 적절한 주차대수 설치
3	대형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및 보행자 안전 대책 등

3. 위 변경 이외에는 변경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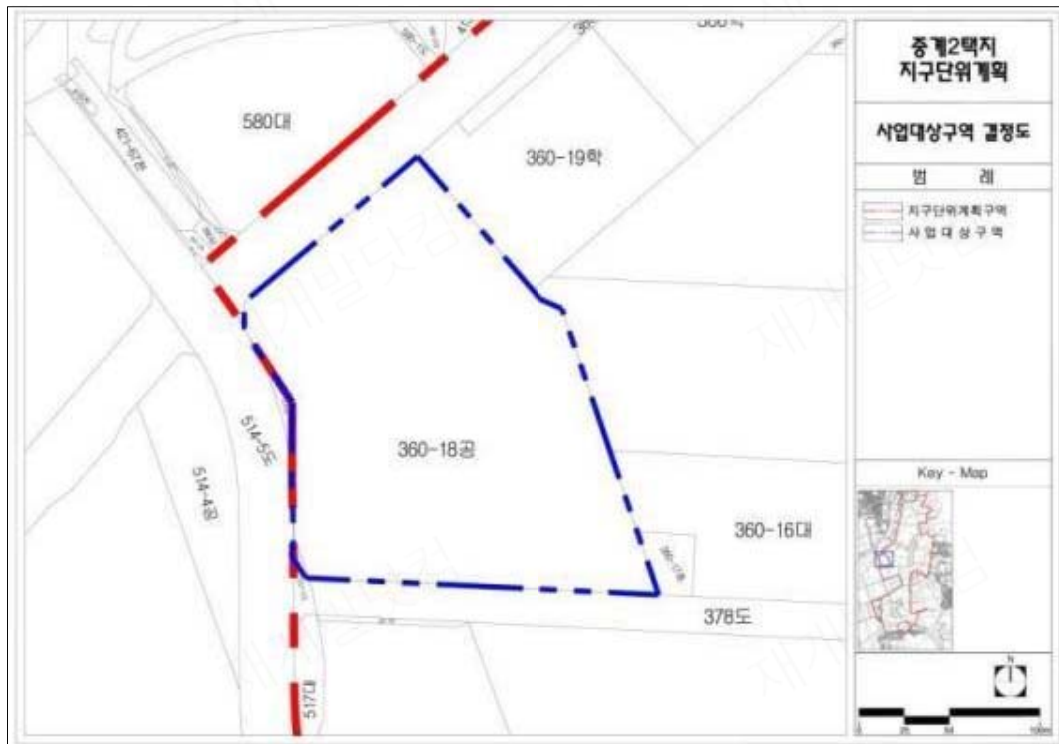
4. 관계도면 : 붙임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5. 고시된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98) 노
 원구 도시관리과(☎02-2116-386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